

#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세무 담당자 세미나

**2021. 12**

# Table of Contents



**I. 연말정산**

**II. 이전가격 정책 운영**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IV. BEPS Compliance**

# I. 연말정산

## 1. 연말정산 개요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 1. 연말정산 개요

## 1.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2.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3.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 4.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1. 연말정산 개요, 계속 - 세액계산 흐름도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공제한도 : 2,000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6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1. 연말정산 개요, 계속 - 세액계산 흐름도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2개)	그 밖의 소득공제(9개)
① 건강·고용보험료	①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② 주택자금	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③ 벤처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④ 신용카드 등 사용액소득공제
	⑤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⑥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42%
100,000만원 초과	45%

# 1. 연말정산 개요, 계속 - 세액계산 흐름도

5단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할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 중소기업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금수령액 감면 · 성과공유제중소기업경영성과급감면 · 내국인우수인력국내복귀감면
- 근로소득 · 납세조합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 개정취지 -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근로소득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li> </ul> </li> <li>•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li> </ul> </li> <li>•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는 제외</li> </ul> </li> </ul>	<p>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p> <p>단서 삭제</p>
신설	<p>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li> <li>•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li> <li>•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li> </ul>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개정취지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li> <li>• 숙직료, 여비 (자차운전시 월 20만원)</li> <li>•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등이 받는 위험수당</li> <li>•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li> <li>•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li> </ul>	<p>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p> <p>&lt;삭 제&gt;</p> <p>좌 동</p>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개정취지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li> <li>•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의 경우 1주택자 포함)</li> <li>•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li> </ul>	<p>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p> <p>좌 동</p>
<p>추가</p>	<p>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의 경우 1주택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국적동포로서,</li> <li>•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li> </ul>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

-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금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li> <li>-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li> <li>-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li> </ul> </li> </ul>	<p>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p> <p>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p>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 5천만원	35	8,800 ~ 1억 5천만원	35
1.5 ~ 3억원	38	1.5 ~ 3억원	38
3 ~ 5억원	40	3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5억원 초과	42
		10억원 초과	45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li> <li>-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li> </ul> </li> <li>• 비과세한도 연간 240만원</li>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관련 종사자</li> <li>-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종)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판대 등</li> <li>②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li> </ul> </li> </ul> </li> </ul>	<p>적용 대상 확대</p> <p>좌 동</p> <p>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li> </ul> <p>삭 제</p>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7.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개정취지 –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종합소득금액</li> <li>-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li> </ul> </li> </ul> <p>추가</p>	<p>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필요경비 산입</p> <p>  좌 동            - 5년 &gt; 10년         </p> <p>-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p>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8.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 개정취지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합리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li> <li>•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li> <li>-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li> </ul> </li> <li>• (월세액 한도) 750만원</li> </ul>	<p>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p> <p>》 좌 동</p> <p>-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gt; 4,500만원</p> <p>》 좌 동</p>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9.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개정취지 – 소비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li> <li>• (공제율) 결제 수단 및 대상에 따라 차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 제 율</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 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도서, 공연, 미술관 등(*)</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 대중교통</td> <td>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 기준</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300만원</td> </tr> <tr> <td>7천만원 ~ 1.2억원</td> <td>25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li> <li>• (적용기한) 2022.12.31</li> </ul>	구 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p>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p>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li> </ul>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li> </ul>
구 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계속

### 1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외국인 기술자,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 (계약금 \$30만달러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li> <li>- ① &amp; ② 의 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력요건) 연구원</li> <li>②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amp;D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li> </ul> </li> </ul> </li> </ul> </li> <li>•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li> <li>• (적용기한) 2021.12.31</li> </ul>	<p>인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간 범위는 확대</p>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amp; ② 의 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li> </ul> </li> <li>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li> </ul> </li> </ul> <p>좌 동</p>

## II. 이전가격 정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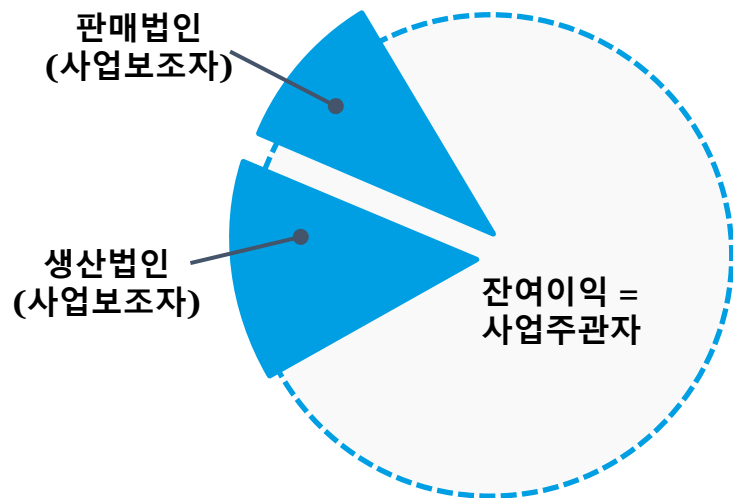
1. 합리적인 이전가격 결정기준
2. 해외사업 이전가격 전략
3. 이전가격 전략 및 기대 이익 수준
4. 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요
5. 실무 상 이전가격 이슈

# 1. 합리적인 이전가격 결정기준



- 이전가격 = 실현된 과세소득을 각 법인 별로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문제
- 소득 분배의 원칙: 각 법인이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 및 사용한 자산에 상응하는 소득이 귀속
- 사업 주관자 (Entrepreneur / Business Principal) 와 사업보조자의 구분이 중요

## 이전가격 결정 기준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사례)



- 사업 보조자 (Contract Manufacturer, Distributor): 수행 기능에 상응하는 적정 마진을 선 배분
- 사업 주관자 (Entrepreneur / Business Principal): 잔여 이익의 향유 / 손실 위험의 부담

각 법인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거래에서의 회사 별 역할 구분

## 2. 해외사업 이전가격 전략



### 현지 주도형(현지화 전략)

- 해외법인이 현지에서의 사업주관자로 기능 및 관련 위험을 부담하며, 본사는 무형자산의 허여/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
- 이전가격 특성규정
  - ① 본사: IP Owner 혹은 거래에 따라서 사업보조자
  - ② 해외 법인: 현지 사업주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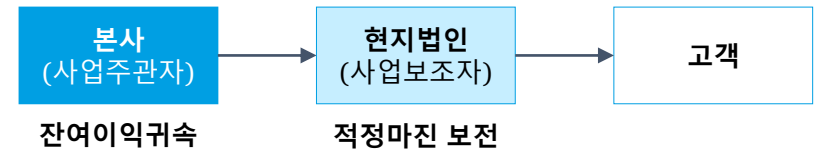
#### [현지화 전략 예시]



### 본사 주도형(글로벌 전략)

- 본사가 글로벌 사업에서 주요 의사결정 및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고 해외법인은 본사의 사업을 위하여 제한적인 기능/위험을 부담
- 이전가격 특성규정
  - ① 본사: 사업주관자
  - ②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 사업보조자

#### [글로벌 전략 예시]



### 개념

### 타사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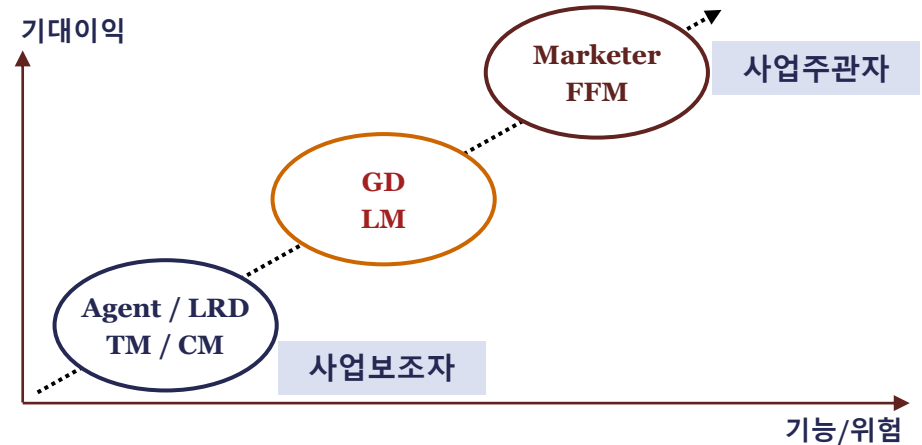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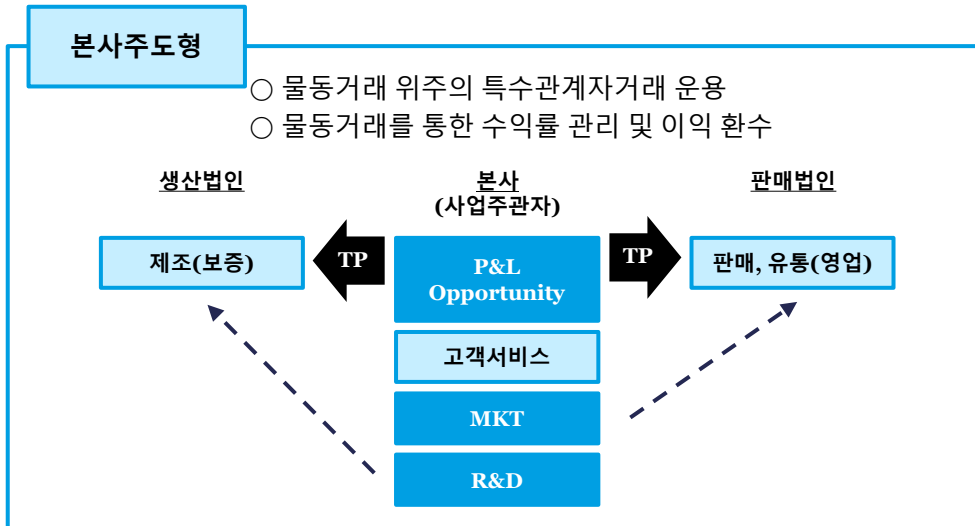
- 자동차 부품社, 유통社, 물류社, 엔터테인먼트社 등
  - 현지 시장 특성이 적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현지화 필요)
  - 높은 비중의 판매 상품을 현지 소싱하는 경우
  - 적시 납기/원가 절감 등이 핵심 경쟁 요소인 경우

- 전자社 등
  - 고부가가치/기술 집약 사업 ⇒ 기술 유출 우려
  - 해외사업의 최초 진출/확장 시
  - 글로벌 역량 집중/대응 필요한 경우
  - 해외법인의 자체적인 운영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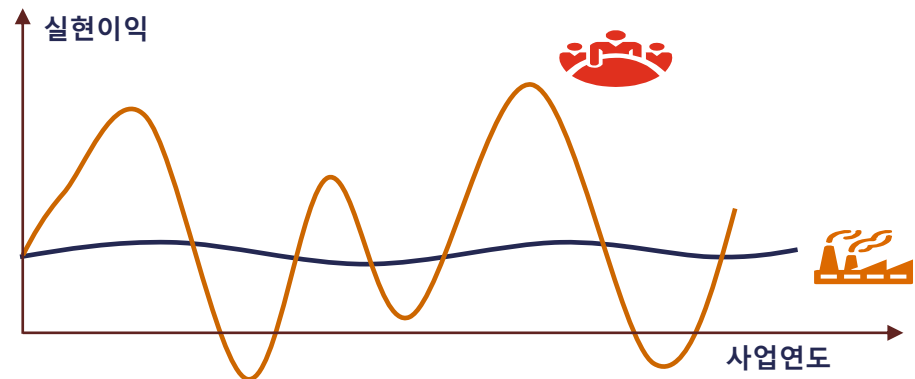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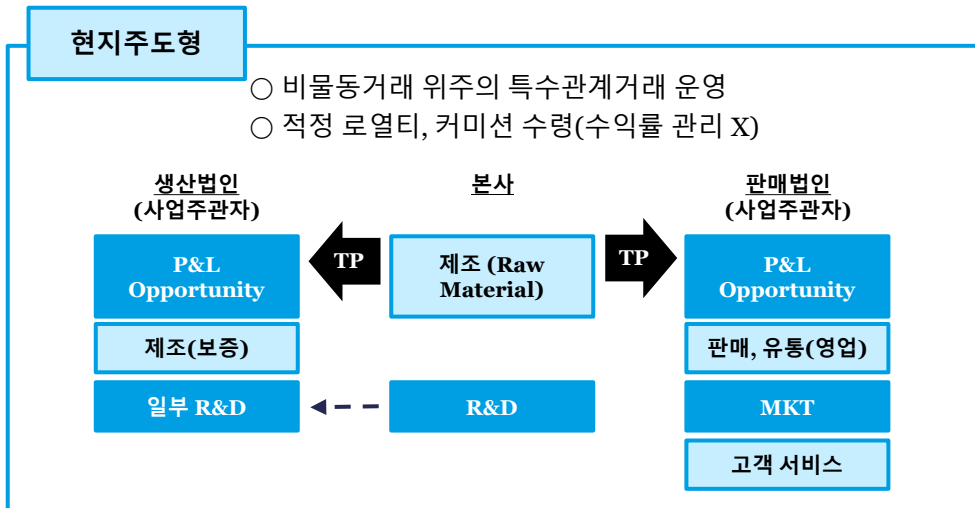
# 3. 이전가격 전략 및 기대 이익 수준



본사주도형과 현지주도형 전략에 따라 각 거래 주체의 기대이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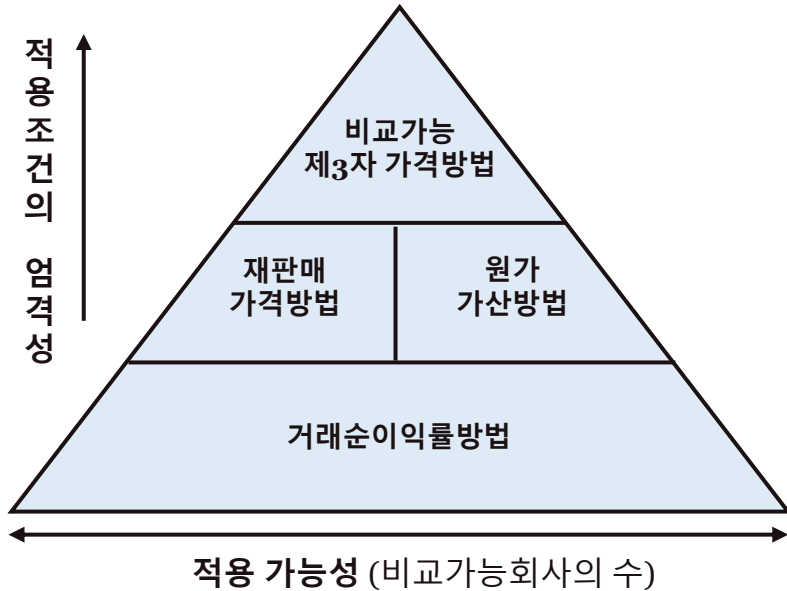
구분	Full Name			
도매	Sales Agent	Limited Risk Distributor	General Distributor	Marketer
제조	Toll Manufacturer	Contract Manufacturer	Licensed Manufacturer	Fully Fledged Manufacturer



# 4. 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요



## ❖ Best Method Rule(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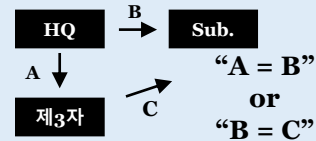


❖ 납세자가 가장 합리적인 TPM 선정가능 (우선순위 X)

❖ 방법론 변경 가능(사업구조 변경 등, 근거 문서화 要)

※ 이익분할방법은 비교가능성 개념이 아니라 언급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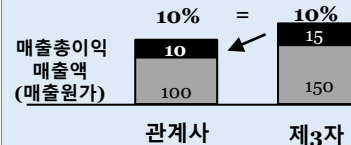
### 비교가능 제3자 가격



### ● 엄격한 비교가능성 요구 이론적으로 가장 우월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 제품, 기능, 위험, 거래단계, 수량, 시기, 지역, 거래조건 (인도, 결제) 및 보증 등 비교가능 요건이 엄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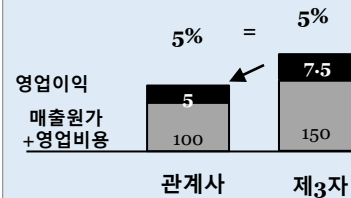
###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



### ● 수행하는 기능 > 거래품목의 동질성

- Resale Price Method (RPM) / Cost Plus Method (CPM)
- 제품의 비교가능성 완화
-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 및 거래단계 등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함 → 합리적인 차이 조정 要

### 거래순이익률방법



### ● 다양한 품목, 거래형태에 적용가능 ▶ 실무적용 용이

-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 “분석대상법인 선정 → 기능 및 위험이 낮은 법인”
- 거래 쌍방 중, 일방의 이익률만 검토함
- 유사한 거래의 통합운영이 가능하며, 관리가 용이함
- 수익성지표: 영업이익률, 총원가가산율, Berry Ratio, 총자산이익률, MOVAC 등

# 5. 실무 상 이전가격 이슈



## (1) 물동거래

구분	현지 주도형	본사 주도형
거래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가 현지법인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현지법인이 완제품 생산하여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사업보조자/현지법인: 사업주관자 역할 수행</li> </ul> </li> <li>○ 본사는 IP Owner로서의 역할도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가 현지법인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현지법인이 완제품 생산하여 본사 재판매 or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현지 시장에 재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사업주관자/현지법인: 사업보조자 역할 수행</li> </ul> </li> </ul>
이전가격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가 공급하는 부품의 적정가 및 제공하는 IP에 대한 적정 로열티 수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가격: 본사의 총제조원가 + Mark-up</li> <li>- 로열티: 본사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액 대비 적정 요율 적용</li> <li>- 적정 이익률 및 로열티율: 외부 Benchmarking을 통한 정상가격 범위 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적정 이익률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이 적정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설정</li> <li>- 외부 Benchmarking을 통한 정상가격 범위 산정</li> </ul> </li> </ul>
이전가격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 관련 본사 수익률 및 로열티율에 따른 이전가격 Risk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수익률, 로열티율의 정상가격 범위 초과/미달에 따라 본사 및 현지법인에 이전가격 Risk 발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 전체 수익률에 따른 이전가격 Risk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 수익률의 정상가격 범위 초과/미달에 따라 본사 및 해외법인에 이전가격 Risk 발생</li> </ul> </li> <li>○ 비물동거래 손익 반영 후 전체 수익률 고려 필요 (비물동거래 적정성은 별도 Challenge)</li> </ul>

# 5. 실무 상 이전가격 이슈, 계속



## (2) 비물동거래

### (기술)로열티

- 물동거래 外 비물동거래(무형자산, 서비스)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 및 과세 사례 증가 추세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도입 환경 하에서 물동거래 外 비물동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
  - 합리적이고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 수립 및 관리 필요
- 본사 및 그룹 관계사에 지급하는 무형자산 사용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 여부 입증 필요
  - 본사 및 그룹 관계사로부터 제공받는 무형자산의 실재성 검토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통한 로열티율의 정상가격범위 Benchmarking
  -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 수립 및 운영의 일관성 check 필요

### 그룹 MSF

-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그룹 내 공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효익을 얻는 해외법인에 해당 서비스 대가를 청구하는 사례 多
  - 본사 및 shared service center 등에서 법무, IT, 인사, 재경 등의 공통서비스를 통합 운영 또는 현지법인에 지원하는 경우가 존재함
  - 제공받는 공통 서비스의 효익 및 실재성 등을 과세당국에 입증 필요
  - 공통서비스의 실재성 /비합리적인 배부 기준 등과 관련하여 과세당국 Challenge 사례 다수 존재
  - 사전적인 Evidence Filing (Documentation) 필요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1. BR 적용의 적정성
2. Benchmarking 기준
3. TNMM vs. PSM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1. BR 적용의 적정성 (2/5)



대법원 2021두42481, 2021.10.14

## 처분 개요 및 배경

- 2005~2009 기간 APA 승인(2007) – 판매지원서비스거래 (CUP), 부품 재판매 거래(FCMU)
- 2013년 이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거래순이익률방법(BR)로 변경하여 APA신청 → 철회
- 2014년 세무조사 결과
  - 판매지원서비스 거래: 기존 CUP 기준 적용하여 2013년 신고금액과의 차액 (155억) 조정
  - 부품 재판매거래: 기존 FCMU 기준 적용 + 기준 가격 변경하여 2010~2013년 신고금액과의 차액 (204억) 조정
- 대법원 2018두53221, 2020.10.29 을 통해 기준 가격 변경 부과 처분 파기

## 주요 쟁점 사항

1. 판매지원서비스 거래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의 합리적인 차이 조정 시 고려 사항 (2005년 vs 2013년)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vs. 거래순이익률방법(BR)
2. 부품 재판매 거래
  - 총원가가산율(FCMU) vs. Berry ratio(BR)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1. BR 적용의 적정성 (3/5)



대법원 2021두42481, 2021.10.14

## 주요 판결 요지

### 1. 판매지원서비스 거래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의 합리적인 차이 조정 시 고려 사항 (2005년 vs 2013년)

*동일한 제품, 동일한 복수연도의 거래기간, 동일한 거래처 및 동일한 시장, 동일한 수행 기능 등 고려요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점*

*2013년에 이르러 기존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변경할 정도로 그 내용, 규모, 거래 횟수 등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홍콩 제1 법인과 AA, BB 간 거래는 여전히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 보이는 점*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 판매가격, 매출규모의 변화가 반영되므로, 2005년 이후 물가, 판매가격, 매출규모의 변화가 있었다라도 정상가격 산출 시 반영이 이루어지는 점*

- ➔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기존 사전승인 방법에 따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은 적법함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1. BR 적용의 적정성 (4/5)



대법원 2021두42481, 2021.10.14

## 주요 판결 요지

### 1. 판매지원서비스 거래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vs. 거래순이익률방법(BR)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2.101은 매출총이익률(Berry Ratio)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거래에서 다른 중요한 기능(제조기능 등)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 매출총이익률은 영업비용 및 기타비용 등의 원가구분에 매우 민감하여 이로 인한 비교가능성 문제 및 관련 없는 원가(pass thorough costs)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매출총이익률법을 고안한 Charles H. Berry는 'Berry Ratios' 논문에서 회사가 단순 판매활동 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매출총이익률이 인위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저술한 바 있는 점*

- ➔ 판매지원서비스 거래에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a) 회사가 Benchmarking 시 적용한 코드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은 판매지원서비스의 코드인 서비스/기계관련 엔지니어링과 달라 직접 비교가 가능한 업종이라 단정할 수 없음*

- ➔ 회사의 BR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이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1. BR 적용의 적정성 (5/5)



대법원 2021두42481, 2021.10.14

## 주요 판결 요지

### 2. 부품 재판매 거래

#### ➤ 총원가가산율(FCMU) vs. Berry ratio(BR)

*모회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하나의 회사 내부에서의 단순한 자산의 이동 또는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품원가가 총발생원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부품재판매거래는 거래순이익이 부품원가 및 영업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거래순이익과 부품원가 및 영업비용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구입 가격인 표시가격의 60% 가격 그대로 재판매함으로써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의 재판매 가격을 이 사건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정한 결과일 뿐 그러한 거래의 성격이 '구입 및 판매'에서 '단순 중개활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님*

➔ 기존 사전승인 방법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총원가가산율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은 적법함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2. Benchmarking 기준 (1/2)



조심2019서0291, 2021.02.03

## 쟁점 거래

### 1. 사용료 지급 거래

;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영화필름 등의 국내 배급에 관한 재허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  
사용료 금액 = 총 매출 - (배급비용+간접비용+ 총 매출의 3%)

## 처분 개요 및 배경

### ○ 2017년 세무조사 결과

→ 2012 ~ 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의 정상가격범위를 자체적으로 산출한 후 2013~2016기간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사용료 부분 과세

## 주요 쟁점 사항

### 1. 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Benchmarking 기준 적용의 합리성
  - 3년 연속 영업손실 vs. 평균 영업손실
  - 통계적 유의성 vs. 자료의 신뢰성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2. Benchmarking 기준 (2/2)



조심2019서0291, 2021.02.03

## 주요 결정 요지

➤ Benchmarking 기준 적용의 합리성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를 제외하지 않고 이전가격 분석을 한 결과 2012 ~ 2016 사업연도 모두에 걸쳐 정상가격(영업이익률)의 하위사분위값이 영(0) 이하라고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할 때 제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회사를 구분하여 선정하기 위함인 바,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비교가능회사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를 통해 산정한 정상가격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는 데 사용한 제외기준이 불합리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3. TNMM vs. PSM (1/3)



조심2017서2800, 2021.06.09

## 쟁점 거래

### 1. 마케팅 서비스 지원 거래

; 싱가포르본점에 선박유 관련 마케팅·시장조사 등의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

## 처분 개요 및 배경

### ○ 2016년 세무조사 결과

→ 쟁점 거래를 단순 지원 서비스 제공 거래가 아닌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으로서 국내항에서 외항선박용 선박유를 공급("재판매거래")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상대적 인건비 기준으로 이익분할법 적용하여 과세

### ○ 계약서 주요 내용

→ 선박유, 항공유, 윤활유 및 비행지원 서비스의 마케팅 제공과 관련된 사업조직 및 지원, 일반적 마케팅 및 사업홍보, 고객 및 공급업체 관계, 시장조사 등에 대한 서비스  
→ 계약을 협상하거나 체결할 권한이 없고, 그 외의 방법으로 싱가포르본점 또는 계열사를 구속하는 어떠한 행동을 할 권한이 없음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3. TNMM vs. PSM (2/3)



조심2017서2800, 2021.06.09

## 처분 개요 및 배경

- 청구법인 조직도, 예산 자료, 관련인 진술을 기초로 처분청이 제출한 지점의 수행 업무
  - 목표설정·예산 편성, 계약서 및 송장예의 서명, 일정한 수준의 계약(총 물량 1만톤 이하)에 대한 승인, 그룹 내위 원회(MWCM)의 위원으로서 활동(신규 고객인 선사와의 거래 시작, ○○○ 그룹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에 대한 승인 등) 등을, 브로커가 가격 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정유사와 공급가격을 협상하며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정유사와 선사에 대한 접대 등을 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거래를 확정하는 것으로 보여짐
- 그룹사 내부적으로 이익분할법 적용 사례 존재
  - 선박유 트레이딩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와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가 다른 경우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여 이익 배부함

## 주요 쟁점 사항

1. 이익분할법 적용의 합리성
  - TNMM(총원가가산율) vs. 이익분할법
2. 이익 배부 기준의 합리성

# III. 최신 국제거래 관련 판례 – 3. TNMM vs. PSM (3/3)



조심2017서2800, 2021.06.09

## 주요 결정 요지

- TNMM(총원가가산율) vs. 이익분할법

*'청구법인이 싱가포르본점의 한국 내 영업조직으로서 영업기능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가가산법 보다는 이익분할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귀속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

- 이익 배부 기준의 합리성

*오로지 인건비만을 이익창출에 공헌하는 요소로 보고, 이익창출의 공헌요소가 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은 안분기준에서 배제한 점 등으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익분할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

# IV. BEPS Compliance

## 1. LF 개정 서식 유의 사항

# IV. BEPS Compliance



## LF 개정 서식 유의 사항

### 특수관계인 공시 범위 (II-1~II-3)

[기존]

####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개정]

####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 IV. BEPS Compliance



## LF 개정 서식 유의 사항

### 특수관계거래 공시 범위 (II-6)

[기존]

####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지급액 및 수취액란에 증여 거래는 시가를 적고, 증여 외 거래는 실제 지급액 및 수취액을 적습니다.
-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금액을 적고, 지급액 및 수취액은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가. 지급액

상호 또는 성명	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	발생액(원)	지급액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개정]

####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IV. BEPS Compliance



## LF 개정 서식 유의 사항

### 기타 개정 사항

#### ○ III-3, 4 본문에서 삭제됨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 ○ II-5 단서 조항 추가

○ 특수관계 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을 요약한 내용은 '별지 제13호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 손익계산서'에 작성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나 아래 '14.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에서 손익계산서를 별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부표 3~5 거래 생략 기준

## **Samhwa Accounting Corporation**

Samhwa B/D, 407, Bongeunsa-Ro, Gangsam-Gu  
Seoul, Korea

**[www.shcpa.co.kr](http://www.shcpa.co.kr)**